

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[별표 2] <개정 2018. 9. 18.>

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 (제4조 관련)

장해등급	가산지급액
1급 ~ 4급	월봉금액의 4배
5급 ~ 8급	월봉금액의 3배
9급 ~ 12급	월봉금액의 2배
13급 ~ 14급	월봉금액의 1배

비고: 장해등급은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 및 별표 3·별표 4에 따른다.